

1.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안' 마련의 배경 및 진행과정

- (1)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회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새움터 및 매춘여성 지원단체인 한소리회 등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군산화재참사 이후 거듭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매춘여성에 대한 감금, 인신매매, 강압적 채무 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안마련을 위해서 여성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산하에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20여 차례의 모임을 갖고 법안을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 (2) 이 법안의 준비과정에는 이찬진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법률지원을 하였으며,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진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 (3) 법안을 준비하면서 전문가회의는 UN의 성매매, 인신매매 관련 국제조약, 각국의 입법사례 등을 조사·연구하였고, 또한 매춘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거쳐 법안에 반영하였다. 매춘여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탈매춘여성들에 의해 '현장의 소리'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장의 소리를 발표할 예정인 탈매춘여성들에 대한 사전개제는 여성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삼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성매매 알선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의 근거

- (1) 국제조약의 근거 : 지난 1950년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법', 1979년 제정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그리고 '1995년 채택된' '북경여성선언문과 그 행동강령'에 따르면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각국은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채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성적 착취 금지를 위해서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관련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성매매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한국 정부의 주요 관심은 매춘여성의 규제와 단속에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소개·유인·유괴하거나 합의여부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매춘업소의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과 이를 방조하는 경찰공무원과의 연

결고리 근절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은 방기되어 왔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난 7월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여성연합의 법안 제정활동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미비를 이유로 곤경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완하는 역할로도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성매매 알선 구조와 유착관계의 실상 : 군산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선불금이나 부당한 채무를 지고 있으며, 구직에 나선 상태에서 인신매매된 채 감시,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업주와 인신매매 사범이 연결되어 매춘여성을 관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관할 유흥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전적 또는 성적 상납을 받아 왔던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다.

(3) 매춘여성들의 의견 :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자신을 ‘성을 파는 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알선업주를 ‘성을 파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매춘여성 대부분은 업주에 의해 팔려질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춘여성을 성을 파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률이 포주들은 다 빠져나가고 약자인 여성들만 처벌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0년 6월, 30명의 새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동두천, 평택, 군산, 서울, 인천, 제주도 등지에서 거주하는 탈매춘여성들에게 전화 설문조사)

(4) 매춘여성들의 ‘공창제도’에 대한 의견 : 30명의 여성 중 1명이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고 29명은 반대의 의견을 밝혔다. 근거로는 매춘여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근거로 볼 때, 특정지역을 설치하여 정부와 경찰이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의 주요 기초

(1) 이 법의 명칭은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로 한다.

(2)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며, 성매매 된 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이 법은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인신매매·감금·강간·폭행 및 구금·협박·위계·선불금 기타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자 등에 대해서는 초범에 한하여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그 형을 면제한다. 또한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긴급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등 관련법령에 따른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및 동기간 중의 무료숙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시설을 가기보다 감옥을 원했던 만큼 여성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시설을 바꾸어 오히려 여성들이 시설을 이용해야만 사회복귀가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한다.
- (4)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의 3~1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5) 이 법은 성매매된 자인 외국인 여성의 보호와 국제간 인신매매 등의 방지를 위한 형사제도의 강화 및 국제공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
- (6) 이 법은 보복범죄의 가중처벌등을 적용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와 관련된 단서를 제공, 진술, 증언하는 자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둔다. 또한 보복범죄의 방지를 위해 신고자와 그 친족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받도록 한다.
- (7) 이 법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몰수, 추징된 불법수익의 3-15% 범위 내에서 신고자, 자수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둔다.
- (8) 이 법은 성매매와 연관된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채무인수금, 대위변제금, 보증채무금, 신체에 관한 불법적인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약정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채권 기타 위와 관련된 일체의 채권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